

접근 금지 명령 해제란 무슨 뜻인가 What Dissolving a Restraining Order Means (Korean)

- 본인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판사가 피고에게 내린 법적 제재조치를 해제 해 줄 것을 판사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합니다. 본인은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 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I am voluntarily asking a judge to take away the legal restraints entered against the defendant which were issued by the Judge at my request. I understand that I am asking the court to now dissolve the restraining order, and a final decision will be made by a judge.
- 일단 이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되면, 본인은 피고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혜택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 다른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보호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은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서, 새 소장을 작성하고 새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 Once this Restraining Order is dissolved, I will not benefit from any special protection from the defendant. I cannot obtain this protection again unless there is another act of domestic violence. In that event, I will have to go to the courthouse or the police station, fill out a new complaint and request a new Restraining Order.
- 접근 금지 명령에 따른 보호 조치들 중 하나는, 만약에 피고가 “접근 금지”조항 (제 1 부)을 위반하면 의무적 체포인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없으면, 경찰이 피고를 체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법원에서 피고가 본인에게 접근을 금하는 다른 접근 금지 명령 (본인의 이혼 소송 사건이나 자녀 양육비 소송 포함)을 본인이 갖고 있다 해도, 피고가 그 명령을 위반한 이유로 경찰이 체포하는 것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 I understand that one of the protections of a Restraining Order is a mandatory arrest if the defendant violates the “no contact” provisions (Part I). I understand that without the Restraining Order, it is not mandatory that the police arrest the defendant. Even if I have another order from this court that says defendant must stay away (included with my divorce case or my child support case), it is not mandatory that the police arrest the defendant for violating that order.
- 본인이나 경찰이 형사 고발을 했을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을 취하해도 형사 고발이 취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판사의 결정은 최종이며 이로써 본인의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판결은 본인에 대한 가정 폭력 행위의 결과로 본인이 받았던 모든 보호조치들이 종결됩니다.
 - I understand that if criminal charges were filed by me or the police, dismissal of the restraining order does not dismiss the criminal charges. The Judge’s decision to dissolve this Restraining Order is final and will close my case. This will end all the protections I received as a result of the acts of domestic violence committed against me.
- 본인은 “접근 금지 명령 해제 확인서”에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I understand that I should only sign the “Certification to Dissolve a Restraining Order” voluntarily.
- 본인은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또 피해자 옹호원과 상담하거나 또는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 I have been told about the Domestic Violence services and have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speak to a victim advocate or have spoken to my attorney.
- 만약 귀하가 접근 금지 명령 해제에 관해 의구심이나 질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누구에게서라도 이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시키기 위한 협박, 강압 또는 강요를 받은 일이 있으면, 가정 법원의 접수 담당자나 다른 직원에게 알리거나, 희생자 옹호원이나 귀하의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If you have any doubts or questions about dismissing the restraining order, or if you have been threatened, coerced or forced by anyone to seek this dismissal, tell the intake worker or someone else in family court, or request to speak to a victim advocate or your attorney.